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망 김대성의 상속재산 관리인 변호사
홍주표 소유물건(2024타경129297)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경원

감정평가서번호: 경인2024-08-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인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최 권 옥

감정평가액	일억칠천오백만원정(₩175,000,000.-)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경원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9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방 김내장의 상속재산 관리인 변호사 홍주표 (2024타경129297)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8.21	2024.08.20 ~ 2024.08.21	2024.08.2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75,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7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경인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빈 빌" 제1층 제101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 32.76㎡)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3. 가격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인 2024년 08월 21일로 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방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지니며 통상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별도 평가는 곤란하나 본 평가에서는 귀원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감정평가협회가 제시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배분하여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에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5. 그 밖의 사항

- (1) 본건의 위치확인 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 및 현황 점유부분에 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2)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는 바, 경매참여시 재확인 및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대상물건의 개요

일련 기호	소재지	층/ 호수	용도	대지권 (㎡)	건물면적(㎡)			사용 승인일
					전유	공용	합계	
가	개봉동 139-89외	1층/ 101호	근린생 활시설	21.3	32.76	6.65	39.41	2019. 10.10

* 자료출처 : 의뢰목록,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대지권면적 산출근거 : $(132+152)*21.3/284 = 21.3$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을 말하며, 본건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비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거래사례의 선정

-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사례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m ²)	대지권(m ²)	거래금액(원)	자료출처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개봉동 365-30	00	1/0	24.93	15.08	130,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3.02.12
								2011.10.13
#2	개봉동 314-150	00	1/0	42.41	27.26	270,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3.10.06
								2016.12.13

(2) 비교사례의 선정

대상물건과 동일지역 및 동일 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고 가격시점과 거래시점과의 괴리가 적은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로서 대상물건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1을 선정합니다.

3.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사례로 판단됩니다.(1.00)

4. 시점수정

본건은 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지가변동률에 의한 시점수정이 적절치 않아 한국감정원이 조사,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집합상가, 서울특별시)에 따라 산정된 자본수익률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지역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서울특별시	0.59	0.09	-0.15	0.19
지역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서울특별시	0.08	0.45	0.73	0.56

※ 시점수정치 산정(2023.02.12.~2024.08.21.) : $(1-0.0015*48/90) * 1.0019 * 1.0008 * 1.0045 * 1.0073 * 1.0056 * (1+0.0056*52/92) \approx 1.0227$

2024년 3분기 자본수익률 미공표로 2024년 2분기 자본수익률을 연장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요인	세항목	격차율		비고
		사례	대상	
외부요인	가로조건	1.00	1.00	본건은 사례대비 유사함.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건물요인	설계,설비,시공상태의 양부 등	1.00	1.00	본건은 사례대비 유사함.
	노후도			
	전용률			
	공용시설의 규모, 구성, 상태 등			
개별적요인	층별, 위치별 차이	1.00	1.00	본건은 사례대비 유사함.
	고객 동선의 접근성 등			
	주차장 등의 유무			
	부지에 대한 지분면적의 대소			
	이용상황 등의 차이			
누 계		1.00		1.00 X 1.00 X 1.00

6. 비준가액 산출

사례#1

일련 번호	거래사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 비교	산출가격 (원)	비준가액 (원)
가	130,000,000	1.00	1.0227	1.00	32.76/ 24.93	174,708,173	175,000,0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V. 참고가격 자료

1. 인근 부동산의 시세 탐문조사

인근에서 본건과 유사한 면적의 구분건물은 신축연도, 관리상태, 위치 등에 따라 1억 7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 인근의 평가전례

전례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평가금액 (원)	평가 목적	평가시점
1	개봉동 67-30	00	1 /0	48.51	31.69	180,000,000	경매	2022. 02.07
2	개봉동 122-20	00	1 /0	35.40	20.86	118,000,000	시가 참고	2021. 06.15

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과 참고가격 자료를 종합 참작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

후첨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본건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건물과 대지 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는 구분소유건물로서 상기 가격 검토자료 등에 의해 시산 가격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을 기준으로 본건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경인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1층 101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벽돌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본건은 급·배수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개봉동 139-89, 개봉동 139-90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과밀억제권역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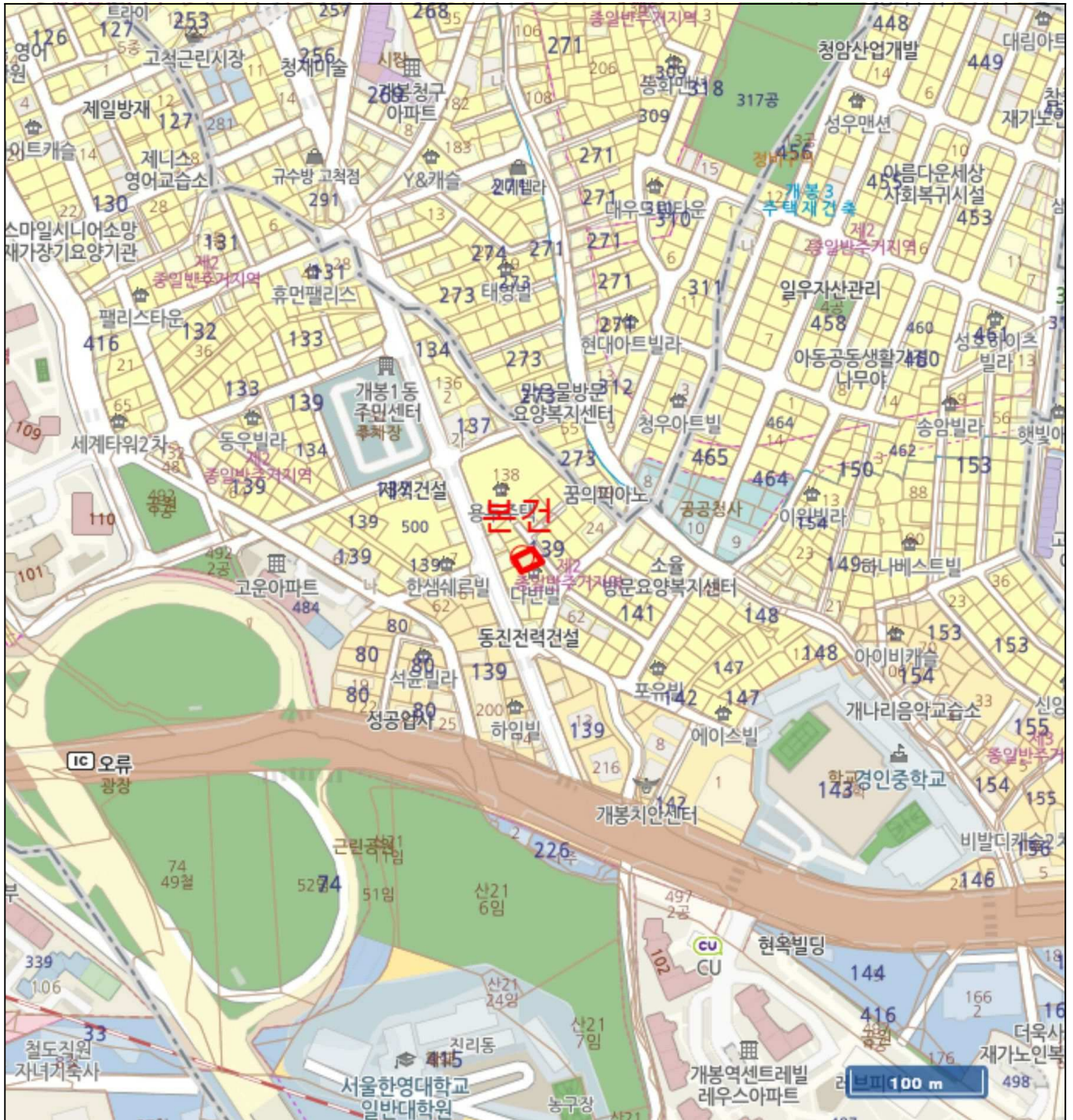
기타 : -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39-89외 다빈빌 제1층 제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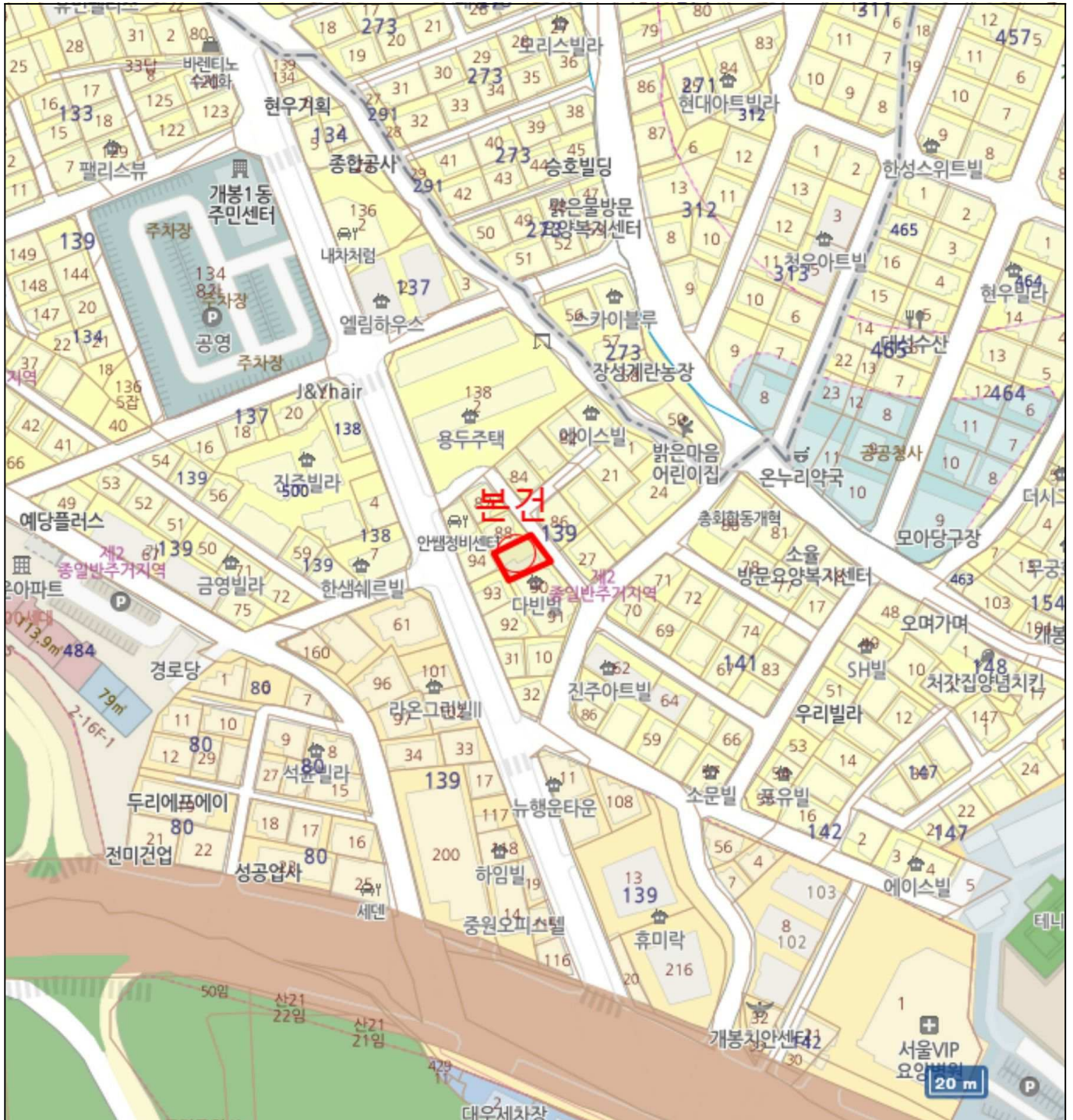


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39-89외 다빈빌 제1층 제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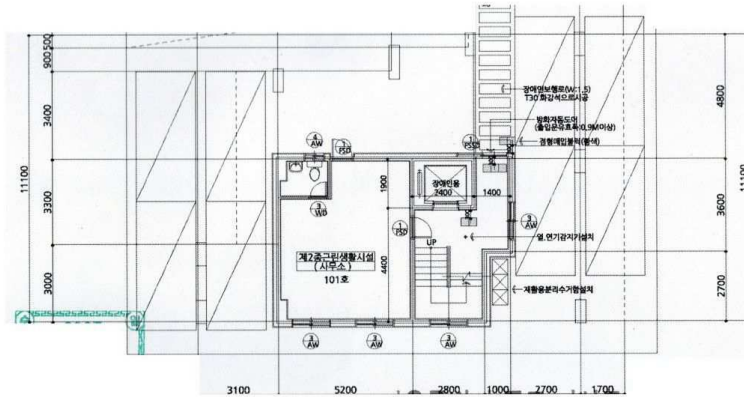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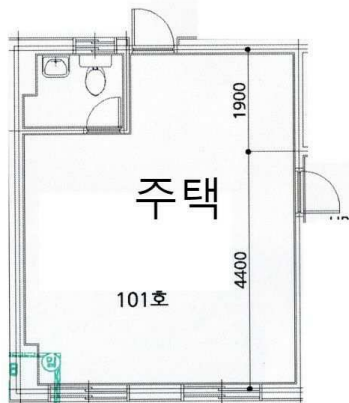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39-89외 다빈빌 제1층 제101호

현열 배치도



내부구조도







2

